

2013년도 제30회 관세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수험번호 | 성명 |
|-----|------|------|------|----|
| 1교시 | 관세법 | 80분 | | |

1. 관세법령상 관세감면의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의의와 사후관리시 담보제공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를 기술하고, 사후관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과 사후관리 물품 중 사후관리의 면제 대상이 되는 물품, 사후관리기간의 기준, 관세감면 승인을 받은 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2. 관세법령상 차량을 통한 국경출입절차로서 관세통로, 도착절차, 출발절차, 물품의 하역, 차량 전환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3. 관세법령상 원산지 확인에 있어서 직접운송원칙과 예외가 되는 단서 조항을 설명하시오. (10점)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령상 개별환급신청의 의의 및 신청기간, 환급신청인, 환급관련 제출서류, 환급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5.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권리와 보호방법,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의 범위를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6. 보세구역장치 물품을 세관장이 직권 폐기할 수 있는 경우와 이들 폐기물품에 대한 관세부담 및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013년도 제30회 관세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수험번호 | 성명 |
|-----|---------------|------|------|----|
| 2교시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80분 | | |

1.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다음을 중심으로 논술향시오. (50점)
 - (1) 제6부에 분류되는 물품의 특성
 - (2) 제6부 주1, 주2, 주3에서 규정한 품목분류 기준
 - (3) 제28류 주1 및 제29류 주1의 규정
 - (4) 제30류부터 제38류까지의 분류체계 및 제30류부터 제38류까지 류(Chapter)의 주에서 규정한 제외되는 물품

2. 다음 각각의 물품을 설명하십시오. (10점)
 - (1) 관세율표 제83류 주2의 카스터(caster)
 - (2) 열펌프(Heat pumps)

3. 통칙 3(나)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요건과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를 설명하십시오. (10점)

4. 다음은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을 열거한 것이다. 각각의 물품이 분류될 수 있는 류(Chapter)와 분류기준(물품의 특성이나 품명 등)을 쓰시오. (10점)
 - (1) 초크(Chalk)
 - (2) 우표
 - (3) 저울
 - (4) 말(馬: Live Horses)
 - (5) 판화

5. 다음 각각의 물품이 분류되는 류(Chapter)를 쓰시오. (10점)

(1) 신선한 고추, 냉장한 고추, 냉동한 고추, 건조한 고추

(2)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다데기★

(3) 고추피클(식초로 보존처리한 것), 고추씨, 고추씨기름

★: 고추다데기는 ① 전체 성분중 고추의 중량비율이 40% 이하임 ② 전체 성분중 마늘, 파, 양파, 생강 등 다데기의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이 두 종류이상 적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으며 이들의 합이 중량비율이 10% 이상임 ③ 전체 성분중 소금의 중량비율이 20% 이하임 ④ 전체 성분중 총 수분(원료자체의 함유수분 포함)의 중량비율이 45% 이상임 ⑤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함

6. 관세율표 제15부의 프로파일(profiles)과 중공프로파일(hollow profiles)을 설명하시오. (10점)

2013년도 제30회 관세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수험번호 | 성명 |
|-----|------|------|------|----|
| 3교시 | 관세평가 | 80분 | | |

1. 수입자인 K는 한국 내에서 생산될 특허물품의 특허권자인 미국의 A사로부터 특허권 사용허락을 받고 그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있고, 기술적으로 미국 A사의 실질적 지배 하에 있는 일본 J사로부터 당해 특허의 내용이 구현되어 있는 원재료를 수입하였다.

라이선스 계약 및 물품구매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허권 사용대가: 4억원(단, 당해 금액 중에는 한국 내에서의 마케팅 전략 및 생산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됨)
2. 당해 수입원재료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 8억 9천만원(CIF 가격)
3.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의 가격: 14억 9천만원(세금 및 권리사용료 제외)
4. 특허권 사용료 가산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정할 것

다음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50점)

- (1) 과세요건을 판정하십시오. (단, 관세법령상 과세대상 여부만 판단하고, 국내생산 활동대가 등에 따른 과세범위의 조정에 대한 판단은 제외할 것)
- (2)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특허권 사용대가(권리사용료)에 대한 조정액 및 가산율을 산정하십시오.

2. 다음에 대해 과세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10점)

- (1) 확인신용장이 개설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수입자가 지급하는 확인 수수료(Confirming charge)
- (2) 물품 구입 후 구매자가 자신을 위하여 행한 수입전 검사비용
- (3)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금형비용

3. 현행 관세법령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구매수수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하십시오. (10점)

- (1) 비과세가 인정되는 구매수수료의 범위
- (2) 비과세되는 구매대리용역의 범위
- (3) 과세대상인 구매대리용역의 범위

4. 수입자 甲은 미국 'AME'사로부터 특정기계를 구입하기로 계약하였다. 구매계약 조건에 따라, 수입자 甲은 미국 'AME'사에 한국 乙사에 의뢰하여 제작한 “설계도면”과 일본 'JPA'사로부터 구입한 “금형”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기계가격: 미화 30만불(FOB 조건)
2. 설계도면 제작비: 미화 5만불
3. 금형구입비: 미화 1만불
4. 운송비용(보험료 포함)
 - ① 당해 기계운송비(미국 - 한국): 미화 800불
 - ② 금형운송비(일본 - 미국): 미화 600불
 - ③ 설계도면의 제공은 메일로 이루어진 바 운송부대비용은 여기서 무시할 것

주어진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수입시 과세가격을 산정하시오. (10점)

5. 한국의 완성차 생산업체 A사는 중국의 현지공장에서부터 부품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완성차 생산에 포함될 원재료의 일부는 한국 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원재료를 국내에서 매입해서 수입할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중국 현지공장에 무상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A사는 중국 현지에서 별도의 부품회사로부터 부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중국 현지공장에 무상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A사는 국내에 소재하는 자동차부품 설계기술자로부터 설계도면을 제작하도록 요청하고 이 설계도면을 중국 현지공장에 부품생산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의 가격: 645,000,000원
- 현지에서 구매한 부자재의 가격: 452,000,000원
- 국내에서 구매한 부품의 중국 현지공장까지 운송비: 3,250,000원
- 자동차부품 설계비: 50,000,000원
- 총예상 수입물량: 25,000(단위), 금번 수입물량: 5,000(단위)

다음에 대하여 산정하시오. (10점)

- (1) 생산지원비에 해당하는 가산금액
- (2) 중국 현지공장에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분할되는 경우, 금번 수입분에 한하여 과세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용

6.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거래가격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금액이 계산 가능한 경우에는 제1평가방법을 적용하고, 금액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평가방법을 배제하고 예외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하는 요건을 설명하고(단서 조항을 배제할 것),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013년도 제30회 관세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수험번호 | 성명 |
|-----|------|------|------|----|
| 4교시 | 무역실무 | 80분 | | |

1. Incoterms[®] 2010의 CIF규칙을 설명하고, 동 규칙으로 매매계약체결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2. 외국환거래법령상에 규정된 지급수단의 개념과 대외지급수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대외무역법령상에 나타난 원산지 판정 절차 및 이의제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4. Incoterms[®] 2010의 E, F, C, D Terms별로 통관의무 및 통관관련비용 부담의 당사자를 설명하시오. (10점)
5.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거부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6. 사전송금결제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